IMO 제50차 복원성 · 만재흘수선 및 어선안전전문위원회(SLF) 참석결과 보고

I. 일반사항

- 회 의 명: IMO 제50차 복원성·만재흡수 선 및 어선안전전문위원회(50th Session of the Sub-committee on Stability, Loadline and on Fishing vessel safety)
- 기간/장소:'07. 4. 30~5. 4 (5일간)

 ICO Headquarters, London,

 UK
- 참 석 자 : 설계심사팀 최경신 선임검사원

II. 의제 목차

- 1 의제의 채택
- 2. 타 기구의 결정사항
- 3. 개정된 SOLAS II-1에 대한 해설서 개발
- 4. 비손상 복원성 코드 검토
- 5. 소형어선의 안전
- 6. **톤**수협약의 **톤**수측정 통일성을 향상하기 위 한 항목의 개발
- 7. 고속선의 동일운항제한에 대한 지침

- 8. 손상상태 여객선의 시간에 따른 생존율
- 9. IACS(국제선급연합회) 통일해석 검토
- 10. Resolution A.266 개정
- 11. SPS Code (특수목적선 코드) 검토
- 12. 손상자료 양식 검토
- 13. MSC/Circ.650의 개정
- 14. 개정된 SOLAS II-1의 주요개조 및 변경에 대한 해석
- 15. 선박의 개방된 수밀문의 영향에 대한 지침
- 16. SLF 51 작업계획 및 의제
- 17. 2008년도 의장 및 부의장 선출
- 18. 기타의제
- 19. 해사안전위원회 보고

III. 의제별 논의경과 및 회의결과

의제 2 타 기구의 결정사항

- 아사무국에서 DSC 11, MEPC 55, MSC 82,FP 51, DE 50의 결정사항을 설명함
- 국제해사기구의 다른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등에서 의결된 사항 중 복원성, 만재흘수선

및 어선안전전문위원회와 관련된 사항도 이 번 회의에서 같이 검토하기로 함

의제 3

개정된 SOLAS Ch. II-1에 대한 해설서 개발

□ 회의결과

- SLF 50/3, SLF 50/3/1, SLF 50/3/2,
 SLF 50/3/3, SLF 50/3/4, SLF 50/3/5
 - 개정된 SOLAS II-1에 대한 해설서 개발 (Annex 1&2), 손상제어도 작성 지침 (Annex 3), 침수감지시스템(Annex 4), "Unfavourable condition", "위험수준의 감소"에 대한 지침 안에 대하여 논의한
 - ※ 우리나라는 개정된 SOLAS Ch. II-1 의 확률론적 방법의 수정된 손상제어 도 작성 지침(안)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 여 독일, 중국 등 많은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결정됨

□ 작업반(W,G 1) 회의결과

- O SLF 50/3. SLF 50/3/2
 - 개정된 SOLAS II-1에 대한 해설서 개발 (Annex 1)
 - 손상가정의 수직방향 범위의 정의규정 을 해설서에 포함(Reg. 2)
 - 횡방향 손상범위의 정의 "b"는 통신작 업반에서 추후 논의(Reg. 7-1)
 - GZmax값은 Reg.7-2.1로 검토(Reg. 7-2)
 - 교차침수 및 평형은 통신작업반에서 추 후 논의(Reg. 7-2)

- 갑판상 적재화물의 침수율은 MSC/Circ. 998 참조(Reg. 7-3)
- 여객선 및 화물선의 이중저 요건을 해 설서에 포함(Reg. 9)
- 빌지 펌핑 배치는 통신작업반에서 추후 논의(Reg. 35-1)
- 추후 논의해야 할 개정된 SOLAS II-1에
 대한 해설서 개발(Annex 2)
 - 특이사항은 없었음
- 손상제어도 작성 지침(Annex 3)
 - 개정된 SOLAS II-1의 확률론적 방법 의 손상복원성규칙에 따라 모든 damage condition에 생존확률을 색깔로 표시 하여 선주에게 손상정보를 주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특히 "s=0(red) condition"에서 선장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생존확률을 색깔로 표시하는 것을 삭제한 수정된 손상제어도 작성 지침(안)을 대부분 국가가 지지하였음
 - 손상제어도 작성 지침(안)을 작성완료 하였으며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해사안 전위회(MSC)의 승인을 요청하기로 결정함
- 여객선의 침수감지 시스템(Annex 4)
 - 아국은 발언한 것 같이, 침수감지 시스템이 요구되는 구획에 대해서 만재흘수선의 TPC(1cm 흘수변화를 위한 배수톤수) 및 30m³ 중 큰 구획에는 요구되어지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, 침수감지시스템으로는 해수유입 감지장치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결정됨

- O SLF 50/3/1, SLF 50/3/3, SLF 50/3/4
 - 논란이 되었던 "any single compartment"의 ment"와 관련하여 "compartment"의 정의는 개정된 SOLAS II-1 Reg. 7-1에 서의 정의를 사용하기로 결정함
 - "any single compartment"의 정의는 건현갑판 하부의 어떠한 구획에서도 선 박의 운항에 영향을 주는 모든 침수구획 으로 규정하고 "여객선의 침수 사고 후 선박의 system 운항 능력"으로 해설서 (SOLAS II-1 Reg.8-1)에 포함하기로 결정함

O SLF 50/3/5

- DE 50의 구명설비(LSA) 통신작업반에 서 생존정의 진수 시, "Unfavorable conditions"에 대해서 구명설비 전개 시 종경사 10도 및 횡경사 20도에서 만족하여야 하며 트림상태에서도 고려해야함을 강조함. 또한 예상되는 최대 종경사 및 횡경사의 최악의 조합에 대해서는 선박의 비손상 상태 및 SOLAS II-1/7규칙에 따라 선박의 생존요건을 만족해야 함으로 추후 DE LSA의 통신작업반에서의 결정되어지는 정확한 해석을 토대로 추후 논의하기로 함
- SOLAS II-1 Reg. 6-2.4의 "주관청이 보다 적은 N값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 (N=N1+N2)를, 여객선이 항해 시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20마일을 넘 지 않은 경우"로 규정한 위험수준의 감소(reduced degree of hazard)를 승인함

의제 4 비손상복원성코드의 검토

□ **회의결과**: 본 의제에 대하여 작업반(WG. 2) 에 위임하여 검토토록 함

□ 작업반 회의결과

- SLF 50/4, SLF 50/4/1, SLF 50/4/2,
 SLF 50/4/3, SLF 50/4/5, SLF 50/4/6,
 SLF 50/4/7, LF 50/4/8, SLF 50/4/10,
 SLF 50/4/11, SLF 50/4/13 & SLF 50/INF.3
 - 12~24m 소형 화물선(SLF 50/INF.3,
 아국 제출문서)과 저속 운항하는 다동선
 (Multi Hull Craft)(SLF 50/4/6, 일본)
 에 대해서는 추가선형에 대한 기준 제정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것임
 - 선박의 폭(B)-홀수(draft)비가 2.5 이상 인 선박은 "최대 복원정 발생 횡경사각은 25° 이상이어야 한다."는 기준을 만족하 기 어려우므로, 대체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아국의 동의에 의하여 대체기준 을 허용하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결정함
 - 상기 수정내용을 반영한 개정 비손상복 원성 코드 초안 작성을 완료하고 이를 MSC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결정함
 - 개정 비손상복원성코드 강제화를 위한 SOLAS 및 1966 ICLL(국제만제을수선) 협약내 관련부분 규칙의 문구를 수정하 고 MSC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결정함
 - 개정 비손상복원성 코드의 주해설서 초 안을 작성함
 - 성능기반 차세대 비손상복원성 기준개발

- 에 대한 장기과제 수행 계획을 검토하고, 이를 위하여 정해진 안전기준에 대한 성 능기반기준 개발이 필요함을 비손상복원 성 코드의 Part A에 명기함
- O SLF 50/4/4, SLF 50/4/9, SLF 4/12 & SLF 50/INF. 2
 - 차세대 비손상복원성기준개발 절차를 정 의하고 Time-frame을 아래와 같이 결정함
 - 2008년 : 차세대 비손상복원성 기준 개 발을 위한 기반 개발
 - 2008년 : 차세대 비손상복원성 기준 개발에 필요한 용어 정의
 - 2009년 : 복원성 취약 현상에 대한 단 순기준의 개발
 - 2010년 : 데드쉽 조건, 추파중 복원성 손실, 파라메트릭 공진, 브로 우칭과 관련된 조종성 문제에 대하여 현 기준을 대체할 수 있는 직접평가 절차 개발
 - 2012년 : 운항지침 개발, 추가 선박에 대한 기준, 차세대 비손상복원 성 기준의 규정화 작업 수행

의제 5 소형어선의 안전

□ **회의결과** : 본 의제에 대하여 작업반(WG. 3) 에 위임하여 검토토록 함

□ 작업반 회의결과

SLF 50/5, SLF 50/5/1, SLF 50/5/2
 SLF 50/5/3 & SLF 50/5/4

- ILO가 서언부분의 수정을 요구하며 2005년도에 개정 완료된 어선안전코드의 관련부분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서언의 수정안을 제시하여 채택됨
- ILO가 제6장 선원의 안전의 6.1.1 위험요 소에 대한 식별 및 위험도의 측정에 대하 여 수정안을 제출하여 채택됨
- 초안문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용어의 통일 등 수정작업을 수행하였으며 "Classification society"는 "Recognized organization" 등으로 변경하였음
- 구조관련 부속서의 문구 앞에 "Reco-mmended"라는 문구를 삽입함
- 소형어선안전작업의 기한연장을 위한 승 인요청문서를 작성하고 동의제에 대하여 작업기한을 2010년까지 연장을 요청하 기로 함
- 성별표현문제에 대하여 "Fishermen"을 현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"Fisheries"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최근에 개정작업이 완료된 어선안전코드 및 자발적인 지침과의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어선 안전코드 및 자발적인 지침의 개정 등이 있는 경우 같이 수정하기로 결정함
- 소형어선안전기준의 초안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관련전문위원회(DE, STW, FP, NAV & COMSAR)에 2회기에 걸쳐 관련부분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고 이번 작업반에서 수정된 부분(Annex I)은 사무국에서 즉시 반영하여 관련 전문위원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함

의제 6

선박의 설계와 안정성의 향상을 위한 1969 톤수협약개정 검토

□ 회의결과

- O SLF50/6, SLF50/6/1, SLF50/6/2
 - 컨테이너고박을 위한 적절하고 안전한 접근수단을 갖추기 위한 최상의 설계에 도움을 주는 가능한 방법의 설계에 대해 서, 덴마크정부는 컨테이너 화물창 내에 9단 보다 더 적재할 경우 컨테이너 자체 의 강도가 문제가 되므로 이를 극복할 만 한 기술적 수준이 아직 없기 때문에 불가 함을 피력함
 - 호주에서 제안한 톤세 결정을 위한 총톤 수의 대체수단으로 1969 TM Convention 에 제3의 톤수를 만들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아국은 대부분의 국가가 1969 TM Convention을 등록톤수로서 적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전혀 다른 개념 의 등록톤수제도를 도입할 경우, 국가별로 새로운 등록톤수 적용에 대한 혼선이 있음 을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되는 성과를 이룸

의제 7

고속선의 운항제한 조건의 일치성을 위한 지침

□ 회의결과

- SLF 50/7. SLF 50/INF.4
 - 고속선의 최악의 운항여건과 운항제한에 대해 주관청마다 상이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일치된 방법을 제안한 의제에 대해 대다수의 국가가 동의하였음

의제 8 | 손상 여객선의 시간별 생존성

□ 회의결과

- O SLF50/8 & SLF50/8/1
 - 손상된 여객선이 안전하게 자력 또는 예 인을 통한 항구로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설계요건을 규정하기 위하여 SOLAS Ch,II-1/8-1규칙을 개정하기로 결정함
 - 손상후 항구로의 귀환 중 침수 중간단계 의 복원성요건을 마련하기로 결정함

의제 9 IACS 통일해석에 대한 검토

○ 이번 회기 제출된 문서없음

의제 10 Resolution A. 266 개정

□ 회의결과

- O SLF50/10
 - 교차침수설비 Res. A.266개정안의 적용에 관해서, 현존선 또는 신선에 적용여부 및 여객선과 화물선 적용여부에 대해 각국마다 의견이 다양하였음
 - Pipe를 사용하지 않고 교차침수설비로 hull duct를 사용할 경우 교차침수시간 계산을 위한 기술적 지침 및 Pipe를 사용할 경우 교차 침수 중 발생할 수 있는 counter pressure를 고려한 충분한 면적을 갖는 공기관을 설치하기위한 기술적 지침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었음
 - 본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여객선 또는 화 물선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선종에 관

계없이 교차침수설비가 설치되는 모든 선종에 대해 개정된 Resolution A.266 을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함

- Resolution A, 266의 개정(안)을 작성완료 하였으며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MSC 승인을 요청하기로 결정함

의제 11 | SPS 코드의 검토

□ 회의결과

- O SLF 50/11
 - 아국은 특수목적선은 구명설비요건을 여 객선기준을 적용하므로 구획 및 손상복 원성요건은 여객선에 준하는 기준을 적 용하려함을 피력하였으며 독일 등 많은 국가의 지지를 받아 결정됨

□ 작업반(W.G 1) 회의결과

- O SLF50/11
 - 특수목적선에 승선하는 기타작업원은 선원과 동등한 교육 및 훈련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응급상황발생시 대처능력이 부족하므로 여객으로 취급함이 적절하다고 결정하고, 이에 따라 구획 및 손상복원성요건은 화물선이 아닌 아래와 같이 여객선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함
 - 50인 이하: 여객선의 0.8R
 - 50~200인 : 50인 이하와 200명 이상 사이 값의 선형보간에 의한 값
 - 200인 이상 : 여객선의 R

※ R: 요구구획지수

(Required Subdivision Index)

의제 12 | 손상자료 양식 검토

○ 이번 회기 제출된 문서없음

의제 13 MSC/Circ. 650의 개정

□회의결과

- O SLF 50/13
 - 개정 MSC/Circ. 650에서 주요개조의 정의에 대해 아국은 현존선이 물리적인 개조 없이 흘수변경을 할 경우 MARPOL부속서1에서도 단순한 흘수변경은 주요개조로 간주하지 않도록 해석하고 있음을 감안 이를 주요개조로 정의하여 손상복원성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발언하였고, 우리나라 의견 내용으로 결정됨
 - 현존선의 정의를 "길이에 관계없이 1992 년 2월 1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과 1998년 7월 1일 이전에 건조된 길이 100m 미만 의 선박"으로 정의하고 "1992년 2월 1일 과 1998년 7월 1일 사이에 건조된 길이 100m 미만의 선박이, 차후 길이 100m 이상으로 주요개조가 발생하는 선박 또 는 1998년 7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"은 현존선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MSC/Circ, 650을 개정 완료함
 - 주요개조의 정의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아국의 발언 한 것 같이 MSC/Circ. 650
 의 개정안 자체에 주요개조의 의미를 내 포하고 있음으로 주요개조를 따로 정의 할 필요가 없음을 결정함

- MSC/Circ. 650의 개정(안)을 작성완료 하였고 MSC승인을 요청하기로 결정함 다른 이견 없이 작업계획 및 잠정의제가 결정됨

의제 14 개정된 SOLAS II-1하의 주요개조 및 변경에 대한 해석

○ 이번 회기 제출된 문서 없음

의제 15 개방된 수밀문에 의한 선박의 생존성 평가 지침

□ 회의결과

- O SLF 50/15, SLF 50/15/1
 - 개방된 수밀문에 의한 선박의 생존성 평가 지침에 대해 너무 엄격한 요구조건이라는 의견과 항해 중 수밀문의 개방을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엄격한 선박의 생존성 지침이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누어짐
 - 아국은 스웨덴과 미국이 제시한 생존성 평가기준은 SOLAS가 추구하는 조화손 상복원성의 평가(Harmonized damage stability assessment)의 흐름을 벗어나 고 선박에 너무 엄격한 평가기준임을 언 급하여 향후 더 많은 논의 후에 결정하 기로 함

의제 16 SLF 51 작업계획 및 의제

□ 회의결과

○ 차기 SLF 51차 작업계획 및 잠정의제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의장의 제안에 별

의제 17 의장 및 부의장 선거 결과

□ 회의결과

- 터기는 차기 의장으로 현재 의장직을 수행 중인 호주의 Mr. R. Gehling을 추천하였 으며,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차기 의장에 추대됨
- 또한, 차기 부의장으로 현재 부의장인 폴 란드의 Dr. Zbigniew Szozda가 추대되어 만장일치로 차기 부의장에 추대됨

의제 18 기타의제

□ 회의결과

○ MODU(Mobile Offshore Drilling Unit)코드의 국제만재흘수선 협약개정사 항의 반영에 대한 비공식 작업반을 구성 하여 MODU코드의 관련부분(최소선수 높이 및 예비부력)에 대하여 개정(안)을 작성하여 DE전문위원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함

IV. 참고사항

- 다음의 프리젠테이션이 실시됨
 - 4/30 : 손상상태 여객선의 항구로의 귀환중 복원성연구 I(영국)
 - 4/30 : 차세대 비손상복원선기준의 개발 방향(독일)

- 5/1: 손상상태 여객선의 항구로의 귀환중 **Ⅵ. 참가소견** 복원성연구 II(영국)

V. 후속조치 사항

- 비손상복원성코드(IS Code)의 개정
 - 아국제출문서(SLF 50/INF.3)에 대하여 작 업반의장(W.G 2)은 향후 비손상복원성코 드의 발전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가치가 있음을 언급하였으므로 지속적으로 관련선 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됨
 - 성능기반 차세대 비손상복원성기준 개발과 관련하여 관련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의제 개발 등을 통하여 선박안전향상 에 대한 아국의 의지 표명이 요구됨
- 0 소형어선의 안전
 - 소형어선안전과 관련하여 어선안전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국가에 대한 적용지 침을 개발할 계획이므로 동작업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여 아국의 어선안전관련 정책 및 기술력의 홍보기회로 활용이 요구됨

- 비손상복원성코드(IS Code)의 개정
 - 아국은 제출문서(SLF50/INF.3)를 통하여 선박안전향상을 위한 아국정부의 노력을 표명하였으며, 소형선박의 복원성능에 대 한 연구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해양사고에 취약한 선박에 대한 관심도를 향상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음
- 소형어선의 안전
 - 소형어선 안전기준의 초안작성이 완료되어 각 전문위원회로 검토가 의뢰되었음
 - 향후 관련 전문위원회(DE, STW, FP, COMSAR 및 NAV)에 소형어선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개진을 통하여 아국이 제안하여 반영된 기준등이 변경되지 않도 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